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924

발의연월일: 2022. 3. 23.

발 의 자:백혜련·박성준·박홍근

남인순 · 오영환 · 이성만

김승남 · 송기헌 · 우상호

이형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 등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형벌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해야 하고, 다른 법률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.

주거약자용 주택에는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데,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한 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이 추진 되고 있으며, 「주택법」은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자에 대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'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처벌을 강화

하여 타 법률과의 균형을 맞추고,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2년 이하"를 "3년 이하"로, "2천만원 이하"를 "3천만 원 이하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벌칙) ① 거짓이나 그 밖	제19조(벌칙) ①
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약자	
용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	
게 한 자는 <u>2년 이하</u> 의 징역	<u>3년</u> 이하
또는 <u>2천만원 이하</u> 의 벌금에	- <u>3천만원 이하</u>
처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